

담당	책임자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DC,기업형·개인형IRP)

전 산 인 자 란

20 년 월 일

은행 사용란	구분	가입자 작성란 <input type="checkbox"/> 고객정보 변경없음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자택주소	
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정보입니다.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이메일주소	@
	직장주소	
	직장전화	
	우편물수령처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주1) 퇴직연금 정보 수신을 위해 은행에 등록된 고객정보(0200)를 확인하시고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퇴직연금 거래 고객인 경우 은행에 등록된 고객정보로 통합되어 관리 되오니 등록된 고객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우편물수령처가 '원치않음'인 경우 법적통지사항은 개인인 경우 직장 또는 자택(직장주소가 없는 경우)으로 발송됩니다.

제도구분	<input type="checkbox"/> DC <input type="checkbox"/> 개인형IRP <input type="checkbox"/> 기업형IRP		
퇴직연금 계좌번호	DC가입자 작성제외	퇴직연금가입 회사명	DC, 기업형IRP의 가입자만 작성
입사일		기산(중간정산)일	*중간정산받은 경우 최종중간정산일의 다음날짜

1. 중도인출신청내용

중도 인출 사유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p>[무주택서약서] 본인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 현재,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 (서명/인)</p>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부담	<p>○[무주택서약서 및 최초 1회 중도인출 확인] 본인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 현재,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며, 현재 근무하는 회사(사업장)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으로 중도인출을 받은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두가지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시 신청이 불가함) (서명/인)</p> <p>○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 - 세대원명의 계약 사유: - 본인은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주거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인)</p>	
	<input type="checkbox"/>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6개월이상 요양비 부담 <input type="checkbox"/>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금액	<input type="checkbox"/> 전부	<p style="text-align: center;">원</p> <p>주1) 전일자 평가금액의 90%, 부담금 입금 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인출 가능합니다. 단, 퇴직소득과 기타소득(가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 퇴직소득 전부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주2) 인출순서는 ①비과세소득(보유상품) → ②퇴직소득(보유상품) → ③기타소득(보유상품)순으로 인출되며, 각 소득별 보유상품을 매도하여 지급합니다. 매도순서 지정은 비과세, 퇴직소득 또는 퇴직, 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상품 '매도순서 지정신청서'(별지-출력물로 제공)를 작성(필수) 하시고 퇴직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뒷면에 매도순서를 작성(필수) 하시기 바랍니다.</p>	
가입자 부담금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입자부담금(적립금) 없음 <input type="checkbox"/> 가입자부담금(적립금) 있음 *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자부담금의 원금은 비과세 적용되므로 신청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과세제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입금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본인계좌만 가능



2. 중간정산 특례 신청

기지급 퇴직금(중간정산)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중간정산일자: _____)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특례적용여부 선택
중간정산특례적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용 <input type="checkbox"/> 미적용
가산월수	제외월수

*주) 당해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 필수, 당해년도외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특례 적용 선택 가능
(중간정산 받은 금액과 최종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합니다.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일부 중도인출 매도순서 신청(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작성 / 퇴직금+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출력물로 작성)

매도순위	상품명	계좌번호	매도금액 (원/좌)

기업명 : _____ (필수) (인/서명) 가입자 : _____ (필수) (인/서명)

※ 인감은 퇴직연금 거래신고 인감 날인, 단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도장 날인 가능(법인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안내	
*사유별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전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제출서류
가입자부담금(적립금) 있으면서 소득(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제외및 환급신청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연합회한도 조회용) 연금납입확인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배우자명의 등기는 신청 불가(공동명의로는 가능) [본인주택 매수할 경우]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매수할 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주택매매계약서 *본인주택을 매도하고 당일자에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 불가 (신청접수일 당일 무주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함) *주택구입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1개월 경과시 신청 불가 [주택분양신청 또는 분양권 매수할 경우]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주택분양계약서(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 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주택 신축 또는 경매취득의 경우] - 재건축은 중도인출 사유 불가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주택설계서 및 공사계약서(신축의 경우), 경매 증명서(경매의 경우) *업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계약금 입금증(계좌이체내역서 가능) -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6개월이상 요양비 부담	- 진단서 및 소견서(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내용 및 질병명과 질병코드 명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저율 분리과세 적용되는 경우 의료비 영수증 또는 간병료와 간병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휴업/후직에 대한 증빙서류 -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의 요양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부양가족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첨부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근로자(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60세 이상인자, 만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문 *신청일 기준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만 신청가능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변제계획서 포함) *신청일 기준 5년이내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만 신청가능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 불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